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정책동향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사회돌봄교섭위원회(Social Care Negotiating Body) 설립 계획[1)]

- 영국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사회돌봄(Adult Social Care) 부문 노동자를 위한 공정 임금 협약(Fair Pay Agreement, FPA) 도입 관련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을 발행하였다. 해당 문서는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설립 방식과 역할, 교섭 절차,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10월 20일 영향평가서가 추가되면서 공정 임금 협약 추진과 관련한 검토 자료가 보완되었다.
- 공정 임금 협약(FPA)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개정안은 노동당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노동당은 산업 부문 전체(sector-wide)에 적용되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최소 기준을 노사 교섭을 통해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돌봄 부문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영국에서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노동법 개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4년 7월 총선으로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6년 고용권리법 제정 이후 약 30년 만에 대대적인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며, '근로 보상 계획(Plan to Make Work Pay)'을 이 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였다. 해당 개혁은 직장 내 권리를 현대 경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그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고용권리법은 2025년 12월 국왕 재가를 받았으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노동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착취적인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금지,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fire and rehire) 금지, 취업 첫날부터 병가, 육아휴직, 부당 해고 보호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다.
  - 호출근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호출하여 일을 배정하며, 이렇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는 최소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중 하나이다. 해고 후 불리한 재고용의 경우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한 뒤 임금을 삭감하거나 노동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해당 법안 제3부 부문별 임금과 노동조건(pay and conditions in particular sectors) 중 제2장 사회적 돌봄노동자(social care workers)에 관한 조항은 사회돌봄교섭위원회(Adult Social Care Negotiating Body)의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and Social Care)은 정부,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해당 교섭기구는 돌봄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한 지침과 범위를 설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해당 교섭기구의 합의 내용은 하위 법령(secondary legislation)을 통해 비준되어 사회돌봄 부문 모든 노동자의 고용 계약에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며, 이는 공정 임금 협약(FPA)을 사회적 돌봄 부문에서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 영국 정부가 발표한 협의안(consultation document)에 따르면, 2023~2024년 기준 사회돌봄 부문 일자리의 약 21%가 호출근로(zero-hours contracts) 형태로 고용되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호출근로 형태 비중인 3.5%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사회돌봄 부문의 이직률은 약 2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부문 일자리의 상당수가 국가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수준이거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에 기인한다.
- 이러한 특성은 부문별 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돌봄교섭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해당 기구는 노동자 권한 강화, 해당 부문 내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돌봄인력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인정과 보상 보장, 생산성 향상 및 생활 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영국 정부는 2026년 가을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하여 해당 위원회를 정식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를 중심으로 첫 공정 임금 협약(FPA)의 예산 및 임금 기준 등을 협상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2028년 4월 최종 비준을 거쳐 영국 전역의 돌봄 노동자 노동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영국 정부는 이처럼 대대적인 법 개정과 유관 위원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내 사회돌봄 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인력 유지를 위해 국가적 경력 구조인 '돌봄 인력 경로(care workforce pathway)'도 도입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인 돌봄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이다. 사회적 돌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Employment Rights Act 202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5/36/enacted (접속일: 2026.05.06.)

GOV·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25.10.20.). "Closed consultation. Fair pay agreement process in adult social care – consultation document",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fair-pay-agreement-process-in-adult-social-care-consultation-document#background (접속일: 2026.05.06.)

UK Government (2025.07.). "Implementing the Employment Rights Bill: Our roadmap for delivering chang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81e6e4e833d031a3158f87/implementing-the-employment-rights-bill-roadmap.pdf (접속일: 2026.05.10.)

UK Government (2025). "Factsheet: Employment Rights Act 2025 – Evidence and Analysi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95e61e72a4a53b73d51382f/employment-rights-act-analysis.pdf (접속일: 2026.05.11.)

UK Parliament (2025.09.12.). "Employment Rights Bill 2024-2025: Lords stages and amendments",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10334/CBP-10334.pdf (접속일: 2026.05.10.)

남선우(2025). 영국: 고용권리법안의 쟁점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11·12월호, pp.51~60. https://repository.kli.re.kr/bitstream/2021.oak/11924/2/%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_v.23_no.6_6.pdf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성별균형 명부제 확대 시행[2)]

- 2025년, 프랑스는 지방의회 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기존에 인구 1,000명 이상 지자체에만 적용되던 성별균형 명부제를 1,000명 미만 지자체에도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혁은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녀 후보가 교차로 배치된 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은 2026년 3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부터 처음 적용되어 프랑스 전역의 소규모 코뮌(Communes) 의회 선거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 프랑스는 199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공직 및 직무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0년 제정된 성별균형 명부제, 일명 '남녀동수법(La loi sur la parité)'은 정당이 명부식 선거에서 남녀 후보를 동수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 그러나 프랑스는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 방식을 이원화하여 운영해 왔다.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프랑스 전체 코뮌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13%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별균형 명부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 결과, 1,000명 미만 지역의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37.6%에 머물렀으며, 명부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 지역의 48.5%와 비교해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 균형 명부식 투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인구 1,000명 이상 지역에만 적용되던 투표 방식이 약 2만 5천 개에 달하는 1,000명 미만 소규모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과거 이러한 소규모 지역에서는 다인 선거구 방식의 다수대표제가 시행되어 성평등 확보에 구조적

2)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2차 투표제(결선 투표제) 기반의 다수대표제와 더불어 유권자가 명부 내 일부 후보를 삭제하거나 타 명부 후보를 추가할 수 있는 교차투표 제도(panachage)가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를 표적 투표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2026년 지방선거부터 확대 적용된 비례대표 명부식 투표제에서는 모든 후보 명부가 남녀 교차 배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후보 명부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권자가 임의로 후보를 삭제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선호투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새 제도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부 완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인구 1,000명 미만 지역에서는 후보 명부가 법정 정원보다 최대 2명 부족하더라도 이를 완전한 명부로 인정하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는 인적자원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구간별 최소 후보자 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구 100명 미만: 최소 5명 (법정 정원 7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100~499명: 최소 9명 (법정 정원 11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인구 500~999명 (신설 구간): 최소 13명 (법정 정원 15명 대비 2명 적은 수준)
- 해당 법안 상정 당시 야당은 인구 밀도가 낮은 소규모 지역에서 성별 균형을 엄격하게 갖춘 명부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 명부만 상정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지방선거 1차 투표를 며칠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Ipsos와 CESI 공과대학(CESI École d'ingénieurs)은 프랑스 국민들이 지방 정치 내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했다.[3] 그 결과 인구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성별균형 명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이 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78%는 여성의 지방 정치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77%는 본 제도가 앞으로 여성의 시장직 진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더불어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응답자의 70%는 해당 제도가 후보 명부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75%까지 높게 나타났다.
- 프랑스의 성별균형 명부제가 지방선거 전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규모 지역에 별도의 후보 명부 인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해당 지역의 현실적

3) 해당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응답자 개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성인 인구를 대표하는 전국 표본 1,000명.
- 할당 추출법 적용: 응답자 성별, 연령, 사회적/직업 상태 유형, 거주지역 및 도시 규모 기준으로 할당. 자세한 내용은 조사보고서 원본 참조: Ipsos & CESI (2026), "Municipales 2026: Vers la parité?," https://www.ipsos.com/sites/default/files/ct/news/documents/2026-03/municipales-2026-enquete-place-femmes-politique-locale-rapport-complet-web.pdf

인 후보 발굴 어려움을 완화하고, 선거 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반면 선거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론은 단일한 방향으로 수렴되기보다 제도 확대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Ipsos (2026.3.12.) "Municipales 2026: quelle place pour les femmes en politique locale?," https://www.ipsos.com/fr-fr/municipales-2026-quelle-place-pour-les-femmes-en-politique-locale (접속일: 2026.5.14.)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 (2025.4.7.) "Municipales 2026 : le Parlement étend aux petites communes le scrutin de liste paritaire," https://www.lanouvellerepublique.fr/a-la-une/municipales-2026-le-parlement-etend-aux-petites-communes-le-scrutin-de-liste-paritaire-1744056716 (접속일: 2026.5.14.).

Ministry of the Interior (2026.3.24.) "Élections municipales et communautaires 2026 : bilan chiffré du premier et du second tour,"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communiques-de-presse/elections-municipales-et-communautaires-2026-bilan-chiffre-du-premier-et-du-second-tour (접속일: 2026.5.14.).

Vie-Publique (2026.2.16.) "Lois pour la parité politique : un dispositif contraignant, des résultats contrastés,"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618-parite-politique-hommes-femmes-quels-resultats (접속일: 2026.5.14.).

아일랜드,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 전략 2025-2030 수립[4)]

- 2025년 11월, 아일랜드 아동·장애·평등부(Department of Children, Disability and Equality)는 「여성 및 소녀를 위한 국가 전략 2025~2030(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25-2030)」을 발표하였다. 이번 전략은 앞으로 5년간 아일랜드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성평등 증진과 보다 평등한 사회 구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공공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번 전략은 2017~2021년 시행된 기존 국가 전략의 성과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해관계자 및 시민 의견 수렴, 청년 참여 회의,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협의, 특별 부처 간 위원회 운영 등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 이번 전략은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가 번영할 수 있는 아일랜드(An Ireland where women and girls can thrive in a gender equal society)'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다음의 7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 존재의 반영(Being Counted): 정책 및 법률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공공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4)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 나답게 살아가기(Being Me): 유해한 성별 규범과 고정관념의 확산을 줄이고, 여성과 소녀가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리더십(Being a Leader): 여성의 동등한 리더십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정치·경제·스포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안전한 삶(Being Safe):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5]을 예방·근절하고, 공공장소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공정한 몫(Having a Fair Share): 노동시장 내 성별 불균형과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돌봄 부담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적·재정적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 건강한 삶(Being Well): 구조적 불평등과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여 여성들이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받기(Being Supported):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분담함으로써, 여성이 돌봄을 제공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 모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전략의 특징은 여성정책을 단순한 권익 증진 차원이 아니라,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사회문화적 요인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으로 설계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여성 혐오, 왜곡된 남성성, 전통적 성 역할 규범 등을 주요 문제로 지목하고, 성평등 교육과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평등을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인식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이번 전략은 여성의 경험과 필요가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하여, 각 정책 목표에 생애주기 접근법(life course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성평등 교육과 온라인 안전, 청년기에는 노동시장 진입과 리더십 확대, 중장년기에는 돌봄 부담과 경제적 안정, 노년기에는 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여성정책을 단기적 지원 중심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구조적 경험과 연결해 설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아울러 이번 전략은 국내 정책 중심의 전략이면서도 성평등 증진을 아일랜드의 핵심 외교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략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의제 등 국제규범과 연계하여 성평등을 기본적 인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평등을 국내 사회정책 차원을 넘어 국제규범 이행과 대외 책임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이행 점검 체계를 이원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번 전략은 이행 점검 체계를 '활동 모니터링(Activity Monitoring)'과 '성평등 모니터링(Gender Equality Monitoring)'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활동 모니터링은 실행계획 과제의 추진 여부와

5) 아일랜드 정부에 따르면 범죄 경험 양상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은 가정폭력, 성폭력, 공공장소 및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물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며, 성평등 모니터링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평등 지표를 활용하여 실제 사회 변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이중 모니터링 체계는 단순히 정책 추진 실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실제 성평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평가하려는 장치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 종합하면, 이번 아일랜드 국가 전략은 여성과 소녀의 삶을 둘러싼 불평등을 개별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주류화, 돌봄의 재분배, 폭력 예방, 노동시장 평등, 건강권 보장 등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생애주기 접근과 이행·성과에 대한 이중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측정·평가하고자 했다는 점은 향후 아일랜드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gov.ie (2025.11.18.), "National Strategy for Women and Girls 2025 – 2030",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campaigns/national-strategy-for-women-and-girls-2025-2030/ (접속일: 2026.5.20.)
gov.ie (2025.11.18.), "Strategy Document and Formats", https://assets.gov.ie/static/documents/dfe2f9bb/The_National_Strategy_for_Women_and_Girls_2025_-_2030.pdf (접속일: 2026.5.20.)
gov.ie (2025.11.18.), "Seven Strategic Objectives", https://www.gov.ie/en/department-of-children-disability-and-equality/publications/seven-strategic-objectives/ (접속일: 2026.5.20.)

호주 2026-2027년 여성예산 성명서를 통해 본 여성 정책 방향[6)]

- 호주 연방정부는 5월 12일(화)에 「2026-2027 회계연도 여성 예산 성명서(Women's Budget Statement)」를 발표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여러 주요 핵심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가 11.5%로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으며, 도달했으며, 세계 성평등 순위가 2022년 43위에서 13위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 현 정부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해 총 44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입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성명서를 바탕으로 호주 연방정부의 예산 배분 방향을 살펴보고, 호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정책 분야를 분석한다.
- 호주 연방정부는 ① 젠더 기반 폭력, ② 돌봄, ③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안정, ④ 건강, ⑤ 리더십 및 대표성 등 다섯 가지 영역을 우선순위 분야로 제시하였다.
  - 먼저, 젠더 기반 폭력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이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양육비 제도(Child Support Scheme)가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원주민 여성과 아동이 비원주민 여성과 아동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젠더 기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을 지원하고,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재정·법률주

6)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거 지원 등 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무급 노동으로서의 양육과 돌봄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균형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유급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의 공동 책임과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비중이 높은 돌봄 분야 종사자에게 공정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 여성의 경제적 평등과 안정 영역에서는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 제도 개혁을 통해 성평등 조치를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은퇴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금(superannuation)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 영역에서는 여성 건강 패키지를 기반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성 대상 1차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더 많은 벌크 빌링(bulk billing) 클리닉*과 공립 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사회인 호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적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과 웰빙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호주의 공공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진료 방식 중 하나로, 환자가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고 의료기관이 메디케어에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따라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료 진료에 해당됨.

■ 리더십 및 대표성 영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여성 리더십과 성별 대표성 강화를 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번 성명서는 기존 여성 예산 성명서와 비교할 때, 개별 정책 영역에 대한 재원 배분을 넘어 젠더 관점을 정책 설계와 규제 구조 전반에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기존 성명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돌봄 지원 등 분야별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성명서는 제도적 허점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젠더 기반 폭력 영역에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제도적 남용과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다. 예컨대 양육비 제도 개혁과 집행 강화는 가족제도나 복지제도가 폭력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평등 영역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저·중소득 근로자 대상 세제 혜택과 고용 규제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조정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돌봄과 건강 영역 역시 유급 육아휴직 확대, 연금 개혁, 벌크 빌링 클리닉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 종합하면, 이번 성명서는 호주의 여성 관련 예산 체계가 점진적 정책 확대 단계를 넘어,

젠더 관점의 제도적 내재화와 구조적 개편을 지향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정책이 특정 분야의 지원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노동시장·돌봄·보건·대표성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구조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영역에서 여전히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재정 투입의 지속성과 실질적 효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ustralian Government. (2026). Women's Budget Statement 2026-2027. https://budget.gov.au/content/womens-statement/index.htm (접속일: 2026.5.13.)

영국, 사회주택법 개정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 확보 추진[7)]

■ 2026년 6월 영국 정부는 사회주택법안(Social Housing Bill)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저렴한 주거 형태로, 장기적인 거주 안정성과 임대료 보조를 제공하며, 주로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 민간 주택시장에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2026년 6월 의회 2차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과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나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 임대 형태로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집에 머물거나, 집을 떠나 노숙과 경제적 불안정의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지만을 남겨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되면서도 기존 생활공간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보호받아야 할 생활 기반이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통제와 협박을 행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대체로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주거 문제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가 된다.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순간 피해자는 직장,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와 돌봄 환경의 변화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녀의 생활 안정과 돌봄 연속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생계와 회복 기반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주거 기반 전체를 다시 세우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영국 가정폭력 국가센터(National Centre for Domestic Violence)에 따르면 성인

7)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5명 중 1명이 생애 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하며, 여성은 4명 중 1명, 남성은 6~7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여성만이 경험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피해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은 반복적인 폭력, 신체적 위협, 성폭력, 살해 등 고위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학대적 관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전 파트너에 의한 심각한 폭행이나 살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정책은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면서도, 여성이 겪는 구조적 위험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사회주택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가정폭력 대응 조치가 포함된 것은 정부가 가정폭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속시키는 조건 중 하나로 주거 불안정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사회주택 임대인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동임대의 경우 피해자가 임대계약 자체를 종료하지 않고서는 가해자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웠고, 이는 피해자를 노숙과 경제적 불안정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또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퇴거 통지를 제출해 공동임대계약을 종료시키고, 피해자가 집을 잃게 되는 허점도 존재했다. 결국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주거권이 오히려 가해자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회주택 임대인과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집을 떠나지 않아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사회주택에서 퇴거시킬 수 있게 된다. 공동임대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임대계약을 피해자 단독 명의로 이전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한 범위에서 적절한 대체 주거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가해자가 제출한 퇴거 통지가 공동임대계약을 종료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도록 했다. 이는 가해자가 주거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집에서 내쫓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 이처럼 개정안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지만, 적용 범위와 작동 조건은 제한적이다. 법안은 사회주택 공동임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나 가해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폭력 사실을 드러내고 임대인 또는 법원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보호 조치가 작동한다는 점도 한계다. 따라서 신고부터 법원 절차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와 함께, 보복 위험 평가와 대체 주거 제공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대응이 주거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은 신고, 처벌, 보호 조치만으로 보장되기 어렵고, 주거 안정, 생계 기반, 자녀 돌봄, 지역사회 지원망과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은 민간 주택시장에서 대체 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폭력에서 벗어나거나 안전한 생활 기반을 회복하는 데 더 큰 제약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는 여성·가족, 형사사법, 복지, 주거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다분야 협력의 과제다. 이번 법안은 피해자

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주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 대응을 위기 개입 이후의 생활 안정과 회복 기반까지 확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GOV UK (2026.6.1.), "Domestic abusers to be evicted under new landmark housing law", https://www.gov.uk/government/news/domestic-abusers-to-be-evicted-under-new-landmark-housing-law (접속일: 2026.6.18.)

GOV UK (2026.5.13.), "THE KING'S SPEECH 2026",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a18713db95db968c8f3bbfd/The_King_s_Speech_2026_-_background_briefing_notes.pdf (접속일: 2026.6.18.)

National Centre for Domestic Violence (2026), "Domestic Abuse Statistics UK", https://www.ncdv.org.uk/domestic-abuse-statistics-uk/ (접속일: 2026.6.18.)

스페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추진[8)]

- 스페인 정부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안은 임신중지를 여성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스페인 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026년 4월 초, 내각은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제43조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추가하고자 하는 조항은 "공공기관은 여성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평등한 조건하에 임신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임신중지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법적 인정이며,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제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Minister of Equality)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헌안이 스페인 정부의 최고 법률 자문기관인 국무원(Consejo de Estado)의 검증을 거쳐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원은 스페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시행령, 행정조치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고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자문기구이다. 레돈도 장관은 임신중지권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본 존엄성 및 인격과 직결된 권리로 인정받았으나,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페인의 현재 임신중지법(Law 2/2010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Abortion)은 임신 14주까지 본인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 단계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미성년자의 접근권, 공공의료 제공기관의 역할 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되어 왔다.

8)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 정부가 개헌을 서두르는 여러 배경 중 하나는 지역별로 극심한 공공의료 서비스 격차다. 임신중지는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으나,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시술을 수행하려는 의료진 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실정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실에서 전체 임신중지 수술의 20%만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상당수의 임신중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의료진은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의사가 임신중지 시술 수행을 거부하고 있어 외부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 아나 레돈도 가르시아(Ana Redondo García) 평등부 장관은 헌법 수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하원 관보(Boletín Oficial de las Cortes Generales)의 공식 초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이 보건권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특정하여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15조와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규정한 제10.1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 정부의 헌법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에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정당들은 이번 개헌이 기존의 임신중지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측은 현재의 법적 체계만으로도 충분한데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특정한 정책 영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법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2026년 4월 30일, 하원은 보수 야당인 국민당(PP)과 복스(Vox)가 제출한 임신중지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 수정안(Enmiendas a la totalidad)을 부결하고, 내각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일각의 반대 움직임을 저지하고 입법 절차를 지속할 동력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개헌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스페인 헌법이 요구하는 특별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 스페인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5(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177표, 반대 171표로 과반은 넘었지만 개헌에 필요한 210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 따라서 보수 야당과의 협치 및 사회적 합의가 향후 입법 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원 합동 위원회의 재조정 또는 하원 2/3 및 상원 과반수의 찬성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당(PP)은 이미 임신중지권은 법적으로 보장하며 헌법개정안은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정부의 헌법개정안은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새로운 조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 하다. 임신중지권을 일반 법적 조항을 넘어서 보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로 보장하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정치적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개정안의 성패는 의회 내 정치적 협상과 표결 결과가 관건일 것이다.

• 참고문헌 •

Congreso de los Diputados (2026.4.13.),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102/000001: proyecto de reforma del artículo 43 de la Constitución Española," https://www.congreso.es/public_oficiales/L15/CONG/BOCG/A/BOCG-15-A-92-1.PDF (접속일: 2026.6.16.)

Euro Weekly News (2026.4.10.), "Spain could give abortion rights constitutional status under new proposal," https://euroweeklynews.com/2026/04/10/spain-could-give-abortion-rights-constitutional-status-under-new-proposal/ (접속일: 2026.6.16.)

La Moncloa (2026.4.7.), "El Gobierno aprueba el proyecto de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6/070426-rueda-de-prensa-ministros.aspx (접속일: 2026.6.16.)

Ministerio de Sanidad. (2026, April 7), "El Gobierno da luz verde al proyecto de reforma para constitucionalizar la vertiente prestacional del derecho a la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https://www.sanidad.gob.es/gabinete/notasPrensa.do?id=6879 (접속일: 2026.6.16.)

RTVE (2026, April 30), "El Congreso tumba las enmiendas a la totalidad de PP y Vox a la reforma constitucional para blindar el aborto,"
https://www.rtve.es/noticias/20260430/congreso-tumba-enmiendas-a-totalidad-presentadas-por-pp-vox-a-reforma-constitucional-para-blindar-aborto/17048261.shtml (접속일: 2026.6.16.)

여성·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과 사회적 가치[9)]

- YWCA 오스트레일리아와 Per Capita Centre for Equitable Housing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 장기 사회주택(social housing) 및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사회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경제적 선택이기도 하다는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호주 전역에서 주택 위기가 심화되고, 여성 노숙이 증가하며, 보건·사법·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거는 응급의료, 경찰, 위기숙소, 사법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를 줄여 공공 부문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치상으로는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gender-responsive)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한 주택에 정부의 예산 1달러가 투자될 경우, 정부는 최소 2.02달러의 측정 가능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을 제공할 경우 경제적 편익은 더욱 커졌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가족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최대 4.66달러까지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 해당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매년 약 350만 호주달러 (약 37.7억 원)의 의료비용과 280만 호주달러(약 30.2억 원)의 사법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YWCA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미셸 필립스(Michelle Phillips)는 이번 연구가 사회주택과 부담가능한 주택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할

9) 조혜인,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중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그동안의 주택정책이 성별에 따라 주거 불안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gender-neutral)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호주 주택시장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다양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 주요 대도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임대주택 위기(rental crisis)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에 임대 매물이 나오면 여러 가구의 세입자가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또한 한국의 전세 제도와 달리 호주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어, 대부분의 세입자는 높은 수준의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2025년 10월 기준 시드니의 주당 중위 임대료는 807호주달러(약 86만 9천 원)로,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495 호주달러(약 376만 원)에 달한다.
-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며,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 가구의 경우 여성 가장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의 노숙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정폭력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주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 및 위기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호주 국가 주택 투자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사회주택과 부담가능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 발표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보고서가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성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세대 간 빈곤의 감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편익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사회·경제적 가치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 이번 연구는 정부가 복지 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여성과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 가정폭력 예방, 노숙 감소, 가족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Forbes (2026), Average Rent in Australia: The Complete Guide. https://www.forbes.com/advisor/au/property/average-rent-price-in-australia/ (접속일: 2026.6.22.)

Percapita (2026), Gender Responsive Housing. https://percapita.org.au/our_work/gender-responsive-housing/ (접속일: 2026.6.20.)

스웨덴의 국가 성평등 전략과 성폭력·성매매 대응 방안[10)]

- 스웨덴 정부는 2026년 4월 20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명예에 기반한 폭력과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10개년 국가 전략(2026-2035)을 제시했다. 니나 라르손(Nina Larsson) 성평등부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 카밀라 발터손 그뢴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서비스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Services), 그리고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복지보건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비전 제로(Vision Zero)' 접근법을 지침으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사회 보호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몇 년간 스웨덴 정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성폭력·성매매 대응 방안들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제시된 성평등 국가 전략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스웨덴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안전위원회(Council for Women's Safety)'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비전 제로' 접근법을 지침으로 삼는데, 이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업무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한다. 여성 대상 폭력의 사회적 용인 수치가 오직 0명이라는 정부의 이러한 방향성은 폭력을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 및 시스템적 실패(systemic failure)로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 '비전 제로' 접근법하에서 정부는 과거의 파편화된 성평등 정책에서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는 강력한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10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5가지의 핵심 전략 분야는 폭력 예방 업무, 폭력 징후 감지, 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범죄 예방, 그리고 재범 방지 업무이다. 이러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3대 기본 전제로 인권 기반 개입 및 강화된 피해자 관점, 모든 폭력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협력, 그리고 지식 및 정보 기반의 업무를 제시하였다.
- 또한 기관 간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따라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을 컨트롤 타워로 각 공공 부처에 세분화된 책임이 부여되었다. 성평등청이 전략의 지침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 국립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는 사회서비스, 보건 및 의료 분야에서 지원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지방 행정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s), 국립

10)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여성폭력 지식센터(National Centre for Knowledge on Men's Violence Against Women, NCK), 통계청 등에서 국가 전략 지원 및 평가지표 개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올해 이러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스웨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온 바 있다. 예컨대 정부는 2025년 9월 25일, 국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 목표로 '명예 관련 폭력 근절(honor-related violence)'을 법제화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폭력이 여타 폭력의 형태와 달리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으며, 구체적인 해결 목표를 별도로 도입하고 관련 대응 업무의 주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연계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6년도 성평등 정책 내 새로운 이니셔티브(신규 사업)에 1억 6,600만 스웨덴 크로나(SEK, 한화 약 210억 원)를 투자하였다. 이는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성평등 예산이었으며 이니셔티브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명예 관련 폭력, 성매매 및 인신매매 대응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 이러한 국가 주도의 성폭력·성매매 근절 대응 방식은 노르딕 모델(Nordic Model)로 대표되는 성 구매자 처벌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성매매 관련 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구조적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을 구매한 사람만을 처벌하며, 성 판매자가 성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 일자리, 심리 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 스웨덴은 형법 제6장을 통해 성범죄 및 성착취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제11조(성적 행위의 구매)가 개정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 구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2022년 8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개정 전 법문의 처벌 대상이 성적 서비스 구매(purchase of sexual services)로 명시되었던 것이 성적 행위 구매(purchase of sexual act)로 개정되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신체 접촉 요건이 아닌 성적 행위 자체에 주목하여 온라인 상의 성매매를 오프라인 성매매와 동일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 여성 폭력 근절과 관련한 최근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 계획안은 정부 수준의 통합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계획안이 만들어진 나라의 사회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의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양상, 식민지 및 전쟁하는 동안의 정부 개입의 역사,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스웨덴과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Criminal Code (1962: 70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brottsbalk-1962700_sfs-1962-700/#K6 (접속일: 2026.06.1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6.04.20.), "New National Strategy for a society free from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6/04/new-national-strategy-for-a-society-free-from-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0.)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5.09.25.), "New seventh target to prevent and combat honor-related violence and oppressio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nytt-sjunde-delmal-for-att-forebygga-och-motverka-hedersrelaterat-vald-och-fortryck/ (접속일: 2026.06.11.)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2026.04.16.), "New Strategy to Strengthen Work Against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jamstalldhetsmyndigheten.se/en/news/new-strategy-to-strengthen-work-against-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1.)

The Swedish Criminal Code,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a2dcae0787e465e9a2431554b5eab03/the-swedish-criminal-code.pdf (접속일: 2026.06.12.)

오스트리아 육아휴직 사용 및 제도 현황[11)]

- 2026년 2월 초, 오스트리아 국립 학술연구기관인 오스트리아 학술원(Austrian Academy of Sciences, ÖAW) 연구진은 부모들의 첫 자녀 출산 전후 노동시장 행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본고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 내용과 함께 최근 오스트리아의 육아휴직 및 육아수당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오스트리아 학술원이 실시한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은 1942년-1997년에 태어나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5,130명의 고용 이력과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결과와 연계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12)] 이 연구에 따르면, 첫 자녀 출산 이후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평균 416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평균 9일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유급 휴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간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성 격차 양상은 직업적 숙련도 수준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직업 전문성이 높은(고숙련) 여성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보다 노동시장에 더 빠르게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으나, 이들 역시 상당 기간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복귀 후에도 시간제 근무 형태로 재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경력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숙련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직업 전문성이 높은 남성 근로자조차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 수준, 이주 배경,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집단에 걸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11)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12)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는 만 16-65세의 사회생활과 직무생활에서 필요한 핵심기본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 지표로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국제 대규모 조사이다.

- 해당 연구진은 오스트리아의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가 경제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업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구 책임자인 클라우디아 라이터(Claudia Reiter) 박사는 "저출산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자주 언급되지만, 현실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여성을 장기간 노동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상황에서 관대한 육아휴직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오스트리아의 현 육아관련 정책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육아휴직(Elternkarenz)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휴직 기간 동안 자녀와 동일한 가구에서 생활해야 하며, 최소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 생후 22개월까지 가능하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자녀 만 2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모 간 첫 번째 전환 시 일정 기간 공동 휴직을 허용하고, 상대 부모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예: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 등) 예외적으로 휴직 기간이 최대 생후 23-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 육아수당(Kinderbetreuungsgeld, KBG)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이다. 육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육아수당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임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주 양육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주 양육자가 변경되면 양육 책임과 수급 대상의 변경 사실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최대 두 차례까지 변경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의 육아수당은 부모가 선택한 급여 모델에 따라 수급 기간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제도는 크게 정액형 육아수당 계좌 모델과 소득연동형 모델로 구분된다. 정액형 모델은 수급 기간을 길게 선택할수록 하루 지급액이 감소하며, 부모가 육아를 분담할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사용 기간을 포함해 전체 수급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소득연동형 모델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부모가 이용할 경우 최대 365일, 부모가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최대 426일까지 지급된다. 선택한 모델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육아수당은 선택한 지급 기간이 길수록 하루 지급액이 낮아지고,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하루 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정액형 육아수당 계좌 모델의 경우, 최단기간을 선택하면 하루 약 41유로(한화 약 6만 6천 원), 최장기간을 선택하면 하루 약 17~18유로(한화 약 2만 7천~2만 9천 원)가 지급된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연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액은 선택한 육아수당 유형과 지급 기간, 부모 간 사용 방식 및 소득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이 밖에도 오스트리아 육아수당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부모-자녀 패스(Eltern-Kind-Pass)와의 연계이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임신을 확인한 후 부모-자녀 패스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임신 중 산전검사와 출산 후 아동 건강검진 기록을 관리한다. 임신 중에는 총 5회의 필수 검사가 이루어지며, 출산 이후에는 자녀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부모-자녀 패스 검진이 실시된다. 오스트리아는

2024년 1월 기존 Mutter-Kind-Pass(모자수첩) 제도를 Eltern-Kind-Pass(부모-자녀 패스)로 변경했다. 해당 검진 프로그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아동의 발달 상태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육아수당(KBG)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검진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육아수당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는 선택한 육아수당 모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 이처럼 세분화된 육아수당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육아휴직 활용과 여성의 경력 단절 간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 격차는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도 운영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지 그 정책적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2026.2.11.) "Unabhängig von der Qualifikation: Elternkarenz wird fast nur von Frauen genutzt," https://www.oeaw.ac.at/news/unabhaengig-von-der-qualifikation-elternkarenz-wird-fast-nur-von-frauen-genutzt-1 (접속일: 2026.7.15.)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Pflege und Konsumentenschutz (no date) "Eltern-Kind-Pass," https://www.sozialministerium.gv.at/Themen/Gesundheit/Eltern-und-Kind/Eltern-Kind-Pass.html (접속일: 2026.7.15.)

Bundesministerium für Soziales, Gesundheit, Pflege und Konsumentenschutz (no date) "Elternkarenz," https://www.sozialministerium.gv.at/Themen/Arbeit/Arbeitsrecht/Karenz-und-Teilzeit/Elternkarenz.html?utm_source=chatgpt.com (접속일: 2026.7.15.)

Finanz (no date) "Karenzgeld in Österreich – Anspruch, Höhe, Dauer – Rechner, https://www.finanz.at/arbeitnehmer/karenzgeld/ (접속일: 2026.7.15.)

영국 국방부, 여성 군인을 위한 고강도 훈련 지침서 발간[13)]

- 2026년 7월 9일, 영국 국방부는 여성 군인의 고강도 군사훈련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인간 수행 능력의 과학: 고강도 과정에 대비하는 여성 군인을 위한 지침서(Science of Human Performance: A guide for servicewomen preparing for arduous courses)」를 발간했다. 영국 국방부가 세계 최초의 여성 군인 고강도 훈련 지침서라고 소개한 이번 지침서는 지난 10년 동안 약 2천만 파운드(한화 약 400억 원)를 투자해 실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연구진은 고강도 군사훈련이 여성의 신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만 2천 건의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 66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 이 연구는 2016년 여성의 지상 근접 전투 역할 참여 제한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여성 군인에게 고강도 전투 역할이 개방되었지만, 군사훈련과 수행 능력에 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군인은 남성의 신체와 경험을 기준으로 설계된 훈련 방식과 건강관리 체계에 적응해야 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영양·회복·건강 보호

13) 이지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까지 남성 기준으로 획일화할 경우 형식적 평등은 유지될 수 있지만, 여성의 부상과 중도 이탈 위험은 커질 수 있었다. 이에 영국 국방부는 여성 군인들이 기존의 기준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 지침서는 훈련(Train), 임무 수행을 위한 영양(Performance Nutrition), 보호(Protect)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1) 훈련(Train) 영역은 지구력, 근력, 군장 운반과 부상 예방을 다룬다. 핵심 원칙은 실제 훈련 과정이나 임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맞춰 조기에 훈련을 시작하고, 개인의 체력과 약점을 고려해 훈련량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근육량과 절대 근력이 낮지만,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남성과 유사한 비율의 근력이 향상될 수 있다. 지침서는 이러한 성별 차이를 여성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는 대신, 충분한 준비 기간과 지속적인 근력 및 군장 운반 훈련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다.
  2) 임무 수행을 위한 영양(Performance Nutrition) 영역은 고강도 훈련 중 여성 군인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낮은 에너지 가용성, 철분 결핍과 골 건강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에너지 섭취와 철분, 칼슘, 비타민 D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수분과 탄수화물·단백질·지방 섭취를 훈련 수행과 회복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다. 지침서는 영양 관리를 개인의 식습관에만 맡기지 않고, 부상 예방과 작전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지원 요소로 다룬다.
  3) 보호(Protect) 영역은 수면, 극한 환경, 장비 및 호르몬 건강을 다룬다. 특히 월경 주기를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활력징후(vital sign)로 보고, 월경 중단, 주기 불규칙성, 출혈량 변화 등을 에너지 부족, 과도한 훈련 또는 건강 악화의 신호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의 체형에 맞는 군장 조절법과 스포츠 브라,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는 배뇨 보조 기구, 비상 생리용품과 폐기 시설, 체형을 고려한 전투복과 방탄복 등을 제시한다. 이는 장비의 적합성이 단순한 편의의 차원을 넘어 호흡, 이동성, 부상 예방과 전투 수행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이번 지침서는 남성의 신체와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군사훈련 및 건강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여성 군인에게 완화된 기준이나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무 기준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조치이다. 또한 여성 군인 개인에게 신체 관리의 책임을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침서를 지휘관과 훈련 교관이 함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훈련 계획 수립, 영양 · 회복 · 의료 지원과 장비 조달에 대한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여성의 신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실제 훈련과 조직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국방 분야의 성별 데이터 격차를 보완하고 이를 정책과 물자 제공 방식의 개선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영국 국방부는 이번 지침서가 여성 군인의 부상을 줄이고, 안정적인 복무와 고강도 직무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여성의 체형에 맞는 방탄판 등 핵심 장비의 조달

과 보급은 여전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지침 배포에 그치지 않고 훈련 교관 교육, 영양·의료 지원과 여성 체형에 맞는 장비 보급을 병행하는 한편, 부상률, 훈련 중도 탈락률, 과정 수료율 및 복무 유지율을 성별로 구분해 지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 결과가 실제 훈련 환경과 복무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GOV UK (2026.7.10.), "New training guide launched to revolutionise health of servicewomen",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training-guide-launched-to-revolutionise-health-of-servicewomen (접속일: 2026.7.20.)

Ministry of Defence (2026.7.13.), "Guide for Servicewomen Preparing for Arduous Cours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uide-for-servicewomen-preparing-for-arduous-courses (접속일: 2026.7.20.)

Forces News (2026.7.10.), "Fit for the fight: MOD spends 10 years and £20m researching women's bodies", https://www.forcesnews.com/women/fit-fight-mod-spend-10-years-and-ps20million-researching-womens-bodies (접속일: 2026.7.20.)

THEiPAPER (2026.7.11.), "The Army is letting female soldiers down in one key area – lives could be at risk", https://inews.co.uk/news/world/army-letting-female-soldiers-down-lives-risk-4636168?srsltid=AfmBOoqbczjYatJw0HYgJWsut7GgNLr-lLa2RwsSezKxiFGzYHhonFhO (접속일: 2026.7.20.)

The Guardian (2026.7.12.),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6/jul/12/how-to-build-an-elite-servicewoman-british-military-top-scientists-look-to-unleash-oestrogen-advantage",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6/jul/12/how-to-build-an-elite-servicewoman-british-military-top-scientists-look-to-unleash-oestrogen-advantage (접속일: 2026.7.20.)

스웨덴의 유럽연합 임금 투명성 지침(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이행 지연 실태[14)]

- 2026년 3월 26일,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 임금 투명성 지침(EU Pay Transparency Directive, 이하 EU PTD)의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EU 차원의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별 임금 평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스웨덴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2026년 5월 22일,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단순화를 위한 재협상이나 '시행 일시 정지(stop-the-clock)' 조치에 EU PTD를 포함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스웨덴은 입법 절차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스웨덴 의회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있고 가을 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국내법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마련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EU PTD의 취지에 동의하고 성별 임금 평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조치를 시행해 온 스웨덴 정부가 지침에 반대하는 이유와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EU PTD는 2023년 5월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은 국내법 전환 기한(transposition deadline)인 2026년 6월 7일까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했다. EU PTD는 유럽연합

14) 윤선우,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회원국 내 성별 임금 격차(Gender Pay Gap)를 해소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지침이다.

- EU PTD는 고용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첫째, 고용주는 노동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노동자의 개별 임금 수준과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집단의 성별 평균 임금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셋째, 임금 보고 결과 정당한 사유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가 5%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 임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임금 차별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투명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고용주는 임금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 EU PTD가 채택될 당시 스웨덴은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침의 설계가 스웨덴의 기존 규정 및 노동시장 모델에 부합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침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스웨덴 성평등 담당 장관 니나 라르손(Nina Larsson)은 지침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스웨덴이 성별 임금 평등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EU PTD에 우려를 나타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금 투명성 지침의 설계가 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복잡하며, 특히 '동등 가치 노동(equal value work)'의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유럽 비즈니스 연합(BusinessEurope)이 제기한 우려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해당 지침이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토대로 형성된 스웨덴의 노동시장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규제가 적절하게 설계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성평등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 이처럼 스웨덴은 해당 지침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지침 이행에 따르는 복잡성과 비용에 대해 고용주들이 제기해 온 우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EU PTD의 핵심 개념인 '동등 가치 노동'을 실무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웨덴 정부와 유럽 비즈니스 연합이 단체교섭, 행정적 부담, 규제 단순화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해당 지침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coordinated pushback)이 힘을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 국내법 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스웨덴의 공공부문 고용주들은 지난 6월 8일부터 지침의 '수직적 직접효력(vertical direct effect)'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민간 고용주에게는 '지침 합치적 해석(directive-consistent interpretation)'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EU PTD에 맞게 아직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기존 국내법을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한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EU PTD 이행 지연은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성과 남성이 동등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는 1957년 이래로 EU의 근간을 이루어 온 원칙이다. 현 스웨덴 정부가 EU 노동법의 핵심 개념인 '동등 가치 노동'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지침의 복잡성을 이유로 EU PTD의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안을 단순한 행정적 조정의 차원을 넘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지침 시행과 관련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응 방향과 유럽 비즈니스 연합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Criminal Code (1962: 70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brottsbalk-1962700_sfs-1962-700/#K6 (접속일: 2026.06.11.)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6.04.20.), "New National Strategy for a society free from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6/04/new-national-strategy-for-a-society-free-from-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0.)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25.09.25.), "New seventh target to prevent and combat honor-related violence and oppression",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nytt-sjunde-delmal-for-att-forebygga-och-motverka-hedersrelaterat-vald-och-fortryck/ (접속일: 2026.06.11.)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2026.04.16.), "New Strategy to Strengthen Work Against Violence, Oppression and Exploitation", https://jamstalldhetsmyndigheten.se/en/news/new-strategy-to-strengthen-work-against-violence-oppression-and-exploitation/ (접속일: 2026.06.11.)

The Swedish Criminal Code,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7a2dcae0787e465e9a2431554b5eab03/the-swedish-criminal-code.pdf (접속일: 2026.06.12.)

국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성평등부(상담소) 공동대응체계 구축

■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 ·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힘.

•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 ·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트라우마, 심리적 무력감, 고립감 등을 호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한 정서적 · 심리적 지원이 요구되거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경찰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보호 ·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최근 3년간 관계성 범죄 신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4-2025년 대비
계	339,804	356,988	439,382	23.1%↑
가정폭력	230,830	236,647	289,368	22.3%↑
교제폭력	77,150	88,394	105,327	19.2%↑
스토킹	31,824	31,947	44,687	39.9%↑

•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 · 도의 가정폭력 등 상담 기관(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개소가 서로 매칭되어 상호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성 범죄 신고 접수 시 피해자보호경찰관-전문상담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공동대응체계 구축>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6. 5. 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81

성평등가족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핵심 국정성과 보고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26.5.20.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핵심 국정성과를 보고함.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제도 강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 신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추모공간 보호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

■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 강화

* 예산 : ('25) 45.5억 → ('26) 76.2억$^{67.5\%\uparrow}$ / 지원실적 : (`24) 35.7만건 → (`25) 38.1만건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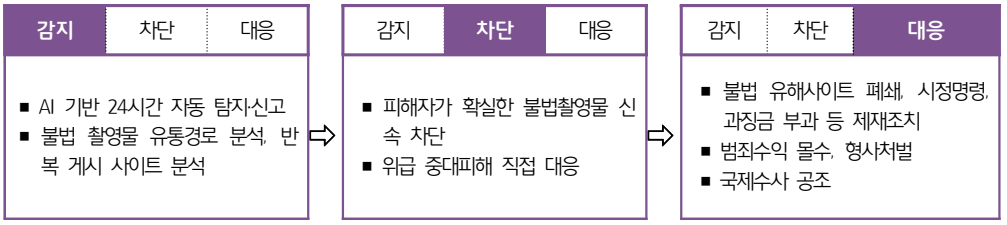

■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전면 개편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5. 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91

성평등가족부,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관계부처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5월 26일(화)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그간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어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5. 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9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성평등가족부는 6월 2일(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7.1.)에 맞춰,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둠.
-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04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 시 피의자 위험도 판단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참고자료(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및 상담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 등)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1호 : 서면 경고, 2호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2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 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11

성평등가족부,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6~'30) 확정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9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힘.

■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음.

■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 이주배경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의 등장,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비전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목표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	가족친화적 일터·사회환경 조성
대과제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모든 가족을 위한 포용적 지원 강화
		가족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민주·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지원
	기본생활 보장 강화	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가정 내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여가공간 조성
	사회적 돌봄 확충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질 제고
		돌봄위기 대응 서비스 강화
		돌봄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일생활·가족의 균형 강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마련
		일·생활·가족이 공존하는 일터 확산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3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 성평등가족부는 9일(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8

성평등가족부, 성별 인식격차 해소 위한 국민 소통·참여 플랫폼 개설

■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누구나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www.youthcce.or.kr) 누리집을 개설하고 6월 10일(수)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힘.

■ 이번 누리집은 2026년 3월 출범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성별 인식격차 해소 논의를 온라인으로 확장하고,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에는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감사례 게시판, ▲청년 공존 · 공감위원회 활동 및 홍보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9

성평등가족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6월 11일 본격 시행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2026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힘.

※ 정의 조항인 제2조와 명예훼손 금지 조항인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6.3.10.)부터 기 시행 중

■ 이에 따라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

■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30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월 1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총괄 부처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이번 협약을 계기로 '27년 고용평등공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사업의 체계적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평등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양 기관은 오는 7월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하고,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30

성평등가족부·한국기자협회 공동포럼 개최, 여성폭력 사건보도 원칙 논의

■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포럼 개최

■ 최근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보도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평등한 사회 인식 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여성폭력 사건보도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 모색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2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강조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대상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184건 의결

- 성평등가족부는 6월 8~9일(월~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 의결
-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으로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약 1억 92백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 원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6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 성평등가족부는 9일(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이하 '범정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28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력체계 재가동 6년 만에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성평등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개최
- 이번 협의체에서는 각 부처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성평등 정책 발굴·수립·시행.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교육 등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평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
- 최근 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 직장 내 성차별, 일·생활 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재가동은 각 부처 민간위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0

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
- 지난 2022년 조사체계를 유지해 성폭력 피해양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피해 지원체계 이용 경험과 지원 수요, 디지털성범죄 유형 등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조사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내년부터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 조사된다.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1

성평등가족부-경찰청, 여성폭력 대응 위한 정책협의체 출범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 개최
-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협의해 왔으나, 최근 스토킹·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여성폭력의 양상 또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여성폭력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함.
- 정책협의체는 차관 주재 회의를 반기별 1회, 국장급 실무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사건 발생 등 현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3

성평등가족부, 이주민 증가 시대 맞춤형 다문화정책 모색 위한 간담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 정책 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이날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과 다문화가족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09.~) : 다문화가족 삶의질 향상 및 사회통합 주요정책 심의·조정 기능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6

성평등가족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적용

■ 성평등가족부는 7월1일(수)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힘.

■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현장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점검 양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음.

* ('25년)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사업, ('26.4월)축제·기념행사 사업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56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급증하는 AI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해 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

및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함.

■ 이번 협의체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AI 악용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 및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6. 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64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5.7.~'26.5.)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밝힘.

■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79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54세 이하 대한민국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재취업까지 평균 7.5년 소요
-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시간제 증가, 근로시간 감소
- 정책 수요는 일·생활 균형 강화, 돌봄 인프라 개선 가장 많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 7. 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146

성평등가족부,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 성평등가족부는 7월 16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 실시

■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중 28건 완료
-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이행 중

■ 상반기 성과

- 양성평등위원회 대면 개최 및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4.30) 등 피해자 보호체계 고도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청소년상담1388 상담인력 확충
- 아이돌봄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하반기 6대 역점과제

①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거버넌스 개편) 성평등위원회 개선권고 기능 신설,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9개→24개 부처 확대, 「(가제)성별균형 성평등정책(안)*」 마련,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27년 전국 확대 추진

* (예) 남성 돌봄 참여 확대, 직무·진로 성별 분리 완화 등

②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 성별격차 완화) '고용평등공시제' 법적 근거 하반기까지 마련 및 현장 안착 노력, 지역 중소기업 대상 성평등 기업문화 확산 교육 실시

③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및 신속한 피해지원)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장관 직접 차단 요청 제도개선 추진, 광고수익 차단 및 사이트 개설 행위 처벌 강화 등 제재 강화, 범정부 협의체 중심 상시 협력체계 지속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조기 탐지 AI 시스템 고도화

④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강화 방안' 추진,「친밀 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최초 실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임대주택 확대 및 "레드플래그 10" 제작·홍보

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 강화) AI 활용 고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청소년회복지원시설·자립지원관 확충 및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대상 집중치유 프로그램 확대

⑥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아이돌봄사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가족관계교육 주간 지정,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지원기준 완화, 주거지원 확대, 민관 협력 등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7.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07

성평등가족부, 가족관계교육 주간 전국 가족센터에서 부모·부부 교육 집중 실시

■ 성평등가족부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가족관계교육 주간'을 운영하며, 전국 가족센터에서 부부·부모·조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교육을 집중 실시함.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가족관계교육 주간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길 기대하며 성평등가족부는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12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2026년 7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령은 인신매매등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은 피해자 확인서 서식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마련되었음.
-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제한적 유의사항 문구가 삭제되어,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2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금)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함.
-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개소 가운데 25개소는 폐쇄되었으며, 운영 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집결지 폐쇄 추진계획 수립 및 TF팀 운영, 성구매 차단 및 집결지 점검 단속 강화,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모색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23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7월 23일(목)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함.
- 이번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등 대응 ▲불법사이트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8월 중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24

성평등가족부,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공표함.

■ 이번 공표 대상은 동종 업종,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여성고용 비율이 3년 연속 낮고, 개선계획 이행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관리자 비율을 제고하는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2026년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346개소, 지방공사·공단 166개소, 민간기업 2,283개소 등 총 2,795개소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07.2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6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2025년에는 디지털 강압적 통제*, 기술매개형 스토킹** 문항을 신설·확대해 다변화된 가정폭력 양상을 반영함.

* 디지털기기 이용 위치 확인 및 일상 감시, 온라인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받도록 함

** 전화·이메일·메신저·SNS 등으로 연락 시도 및 문자·영상 전송, 본인 SNS나 온라인 공간에 개인정보나 허위사실 유포, GPS·휴대폰 앱 등으로 위치 감시 및 추적 등

〈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

■ **(1년간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로, 2022년 7.6% 대비 1.7%p 감소

■ **(이별 폭력)** 이혼·별거·동거종료 경험자의 50.0%(여성 59.6%, 남성 40.0%)가 이별 전·후로 폭력 피해를 경험,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률 14.4%보다 3배 이상 높음

■ **(스토킹)**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9.1%, 남성 18.9%였고,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SNS 감시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모두 여성 피해율이 높아

- 스토킹 피해 여성의 38.2%가 6개 이상 폭력유형이 중첩된 복합 피해를 경험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낮아졌으나, 가정폭력을 피해자나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은 일부 강화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7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불법사이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

■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분석한 불법사이트 3만4,628건의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업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임.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38

아동·청소년 성착취 상담채널 '디포유스', 3년간 1,283명 상담 지원

■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 개설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국 1,000여 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힘.

* 디포유스(@d4youth: 청소년(Youth)을 위한(for=4) 디지털(Digital) 채널) / 카카오톡(채널),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트위터)에 상담 채널 운영 중

■ 성과 분석 결과, 디포유스는 지난 3년간 피해 아동·청소년과 조력자 등 1,283명을 상담했으며, 이 가운데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심리상담, 수사·법률 지원 등 총 325건의 피해 지원을 연계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7.31.]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40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는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법조계, 현장 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여성폭력 대응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 ·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함.

• 참고문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8.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244

[보건복지부]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금)부터 8월 24일(월)까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7.30.]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486&tag=&nPage=3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관해 조사한「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장기요양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장기요양 수급자) 85세 이상 비율 증가, 재가 생활 욕구 확대
• (수급자 가족) 장기요양서비스로 부양부담 완화, 재가 돌봄 의향 증가
•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고령화, 비경제적 근무 이유 증가
• (장기요양기관) 재가 기관 확대, 이용자 모집·인력채용 어려움
• (정책 요구) 이용시간 및 서비스 종류 다양화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8.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533&tag=&nPage=2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 의결함.

■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임.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8.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6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소통 확대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추진과제 발표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 참석

■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양육과 건강한 부부관계 및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부처간 논의를 거쳐 발표되는 내용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중점 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예정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 6. 26.]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7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힘.

-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으로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혼인으로 경차 2대 보유시 1대분 유류세 환급,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신단계까지 확대 등이 포함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

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며,「2026년 세제개편(안)」은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8.12.]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88&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S&pageIndex=1